

창업절차 및 회사설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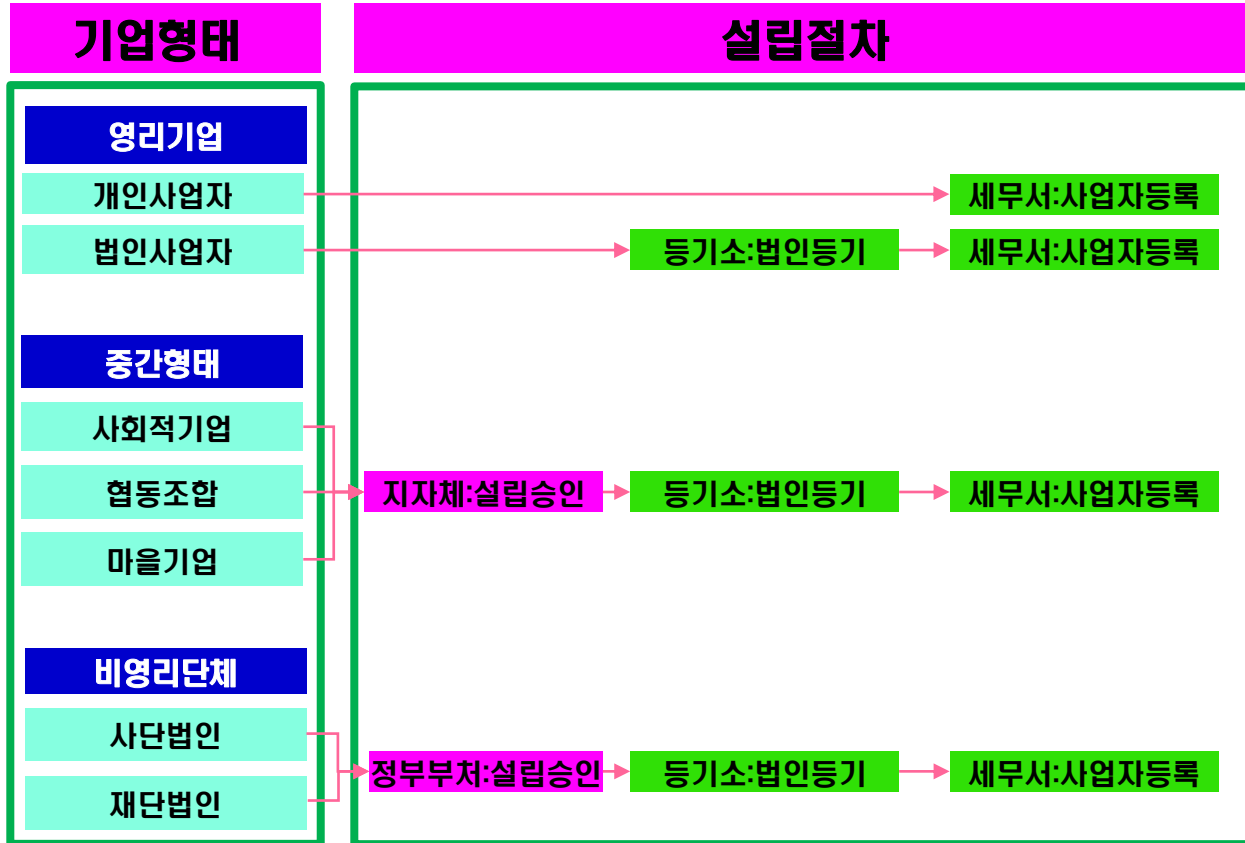
Dreams come true!

꿈을 향한 도전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 회사설립 절차



이용 절차



재택창업 시스템 특성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비교	법인설립대행	재택창업시스템
시간	법인설립대행 약 14.5일 소요	재택창업시스템 약 4일 소요
시간절감 : 법인설립기간 약 10일 단축 [* 보정 및 실제조사 진행시 소요일수가 증가할 수 있음]		
비용	법인설립대행 약 130~150만원 부담	재택창업시스템 법인 등록세 및 수수료 약 9~27만원 부담 1. 종과세 예외 업종인 경우 165,000원) 2. 종과세 예외 업종이 아닌 경우 435,000원 :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포함]
비용절감 : 약 100만원 이상 비용 절감 [* 자본금 5000만원 경우/감면혜택 포함 및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 해당 세무서 민원 봉사실 신청/ 즉시발급
<단,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 후 발급>
- 사업자등록일 역산 **20일 이내**에 상품, 시설자재 등을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구비 서류>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의 경우)
 - ③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거운 가산세.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함]

1)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개인/법인사업자)

- ① **개인사업자** :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 상 별도의 절차 간편, 휴·폐업 비교적 간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
- ② **법인사업자** :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 취득,**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

2)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과세/면세사업자)

- ①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 ②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
[교육용역, 의료용역, 기초 생활필수품, 금융용역, 농업 등 / 농업은 가공되지 않은 1차 상품만 해당]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일반/간이과세자)

- ①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예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구입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부가세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②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 예상 소규모사업자 등록.
: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불가능.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시 차이	복잡한 법적 절차 밟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창업가능	설립시 법적 절차가 비교적 복잡함
	기업에 참여할 자본주 동업자 필요 없음	당해 기업에 참여할 자본주 동업자를 구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
	설립시 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설립시 사업자 등록 외에 법인설립신고
운영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단독 무한책임 - 개인기업주는 기업경영상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재산까지를 처분하여 변제할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출자액의 한도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불리 - 소득세 누진세율→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개인기업의 세부담액이 법인보다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유리 - 재산이전 비교적 용이 - 주주의 경우 재산이전은 주권의 배서, 양도로 종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이전은 기업의 자산,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운영상에서 많은 제약, 의무부담 -> 주로 상법 및 세법에 규정에 기인

구분	장점	단점
<p>설립시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절차간단→설립용이 - 창업비용 및 창업자금이 적게소요 →소자본창업가능 - 기업 활동성의 제반정책 수립, 집행, 계획변경 등을 자유롭고 신속하게 결정, 추진가능 - 사업이윤 전부 기업주가 독점 가능 - 개인기업은 긴밀한 인적 조직체 → 경영방침, 제조방법, 판매정책,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 가능 - 기업주는 고객 및 종업원과 직접 말하는 경우가 많음 → 상호 이해하기가 쉽고 효과적 경영 가능 - 권리장부 및 결산서의 작성이 간단하며 결산 서류는 손익 계산서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주가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부채와 손실에 대해 무한 책임 - 사회적 신용을 얻기까지 시간필요 → 융자, 대출 등에서 제한 - 사업주 개인의 신상에 사고 발생시 폐업, 기업운영에 직접적인 영향 → 사업 연속성 떨어짐 - 투자 및 자입규모가 클 경우 자본조달 능력에 한계 - 경영능력의 한계 존재 - 납세 분리함 - 기업규모가 커질 경우 법인전환 등의 부수 절차필요
<p>운영상 차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출자자의 부담이 적고 자금 모집 용이 - 사회적인 신용이 높음 - 법인세는 법인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세되어 개인 사업자의 부담세율보다 낮아 유리 -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회사와 개인 1/2씩 부담하고 회사부담액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부담경감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 자본조달이 용이→ 대자본 형성 쉬움 - 설립 후에도 주식공모를 통해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액자금 집적 가능 → 주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명백히 구분 → 회사의 도산시에는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만 법적 책임 -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추가 주식매입 및 매각에 의해 출자액을 증감시킬 수 있으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므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 법인에 대한 공신력이 개인기업보다 높아 매출, 직원 채용 등 영업상 유리한 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설립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작성, 출자금의 불입, 임원선정 등의 요건이 엄격히 규정 - 설립등기 시에 정관에 기재된 사업내용을 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규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변경을 하는 경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후 변경등기를 해야 함. - 엄격한 회계장부가 필요→결산서류로써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정리가 필요 - 정관작성,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법인 설립신고 등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그만큼 대표자의 이윤이 줄어듦. -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체계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주주 상호간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시 마찰의 소지가 있고 경영공백이 우려 - 대표이사의 무한책임 경영이 여타 주주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음.

◆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 예상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사업 >

4,800만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①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도정 · 제분업, 양복 · 양장 · 양화점은 가능)
- ② 도매업(소매업 겸업 시 도 · 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③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④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 과세배제 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
- ⑤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 · 용달차운송업, 이 · 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 적용됨)
- 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3.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정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법 제2조제1호]

7대원칙 - 국제협동 조합연맹(ICA)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 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 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게 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 뿐 아니라 법인 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표 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 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 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사업의 이용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 비조합원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에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 인 협동조합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관련 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협동조합 특징



설립신고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 명부 (임원이력서와 사진포함)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설립등기 필요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추진전략은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판로개척, 확대를 통한 수익향상

지원규모

→ 249억(400개 조합)

신청방법

→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coop.sbiz.or.kr>

☞ 온라인 신청 전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하여야 하며,
원본은 선정 후 지원협약체결 시 관할센터에 일괄 제출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1억원 한도

지원자격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동 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원센터 1588-5302 <http://coop.sbiz.or.kr>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자부담 비율	비고	
공동 장소임차	공동사무실	· 회의실 공간 설치 원칙	10,000	[일반] 20% [청년] 15%	선정이후 ' 16년12월분 까지 가능	
	공동작업장	·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공동창고, 소형물류창고 포함)				
	공동판매전시장	· 전시장, 판매장, 체험장				
공동 설비	설비 및 장비	· 생산, 유통 등을 위한 설비 및 장비 · 유통에 부적합한 승용차, 효율성이미흡한 밴·승합차 지원제외 ·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과 단순사무용 기기 지원제외 · 공동장비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 허용	100,000			조합 명의로 공동장소 확보시 지원 (5년간 유지)
공동 R&D	프로세스 개발	·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시스템, 협업사업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도서관리 등) 등	30,000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개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연구개발 등록 확인
	공정개선연구개발	·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 등 각종 기법 개발	· 레시피개발, 판매기법, 제조기법				
공동 브랜드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CI, BI, 캐릭터 개발	20,000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및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공동 마케팅	광고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광고	(1년차 조합) 50,000			신규조합과 기존조합 차등지원
	행사	· 전시회, 박람회(이벤트 포함)	20,000			
	홍보물 제작	· 리플렛(전단지), 카달로그, 브로슈어	70,000			
공동 네트워크	온라인 구축	· 홈페이지제작, 쇼핑몰	20,000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4. 비영리법인 설립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_TO DO LIST

사단법인 설립	내용	비고(소요기간)
STEP 1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1개월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STEP 2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1개월-3개월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STEP 3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1개월
STEP 4 [사업자등록]	⑧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	0.5개월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설립할 협회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에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하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 에서 '전체등기소' 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 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작성

- 정관이란 ?
 - :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 ·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기재사항
 -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 ① 목적 :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 ② 명칭 :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③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실필요, 전국 대표 서울 주사무소**
 -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 자산의 종류 · 구성 · 관리 · 운용방법 ·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 사원의 입사 · 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것을 기재합니다.
 - 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협회 조직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 를 두고 '사원총회' 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 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 '이사' , '사원총회' 및 '감사' 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일정과 장소 정하기

-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제출서류

- ①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명날인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② 정관 1부
- 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④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⑤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⑥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시 주된 검토사항

■ 신청서의 검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참조].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①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②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③ 법인명칭의 유사성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인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33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